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양 문 수**

- I. 머리말
- II. 김정은 시대 핵심 경제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
- III.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특징
- IV.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
- 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에 수록된, 2012~2015년에 제·개정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핵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 성격과 특징을 추출하고, 이 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계획지표 수의 대폭적인 감소, 국민경제 운영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 자율성, 인센티브, 자기책임의 대폭적인 확대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 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이나 공식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제도 개편의 내용 면에서도 시장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했지만 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다.

주제어: 북한, 법령, 제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경제개혁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머리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¹라는 이름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그 추진과정 및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입장에서는 실태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물론 이 조치에 대해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권영경², 이석기³, 김석진⁴, 미무라⁵, 임강택⁶, 박형중⁷, 양문수⁸, 양문수⁹ 등이 대표적인 연구성과이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는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종종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시대의 7·1조치와 비교해서 보면 미무라¹⁰는 과거 2003~2004년에 박봉주 총리가 시험적으로 실시하다 중단된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반면 권영경¹¹은 필연적으로 7·1조치보다 개혁성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서로 강조하는 바가 약간 상이하다. 임강택¹²은 이 조치가 중국처럼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가기보다는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갈 지(之)자 움직임을 보일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석기¹³의 경우, 이 조치가 7·1조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는 공식적인 제도의 변경을 통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진¹⁴은 비록 개혁의 수준이 과거의 중국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이

¹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하위 범주이다. 즉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을 포괄한다.

²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4호 (2013).

³ 이석기,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3).

⁴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겨울호 (2013).

⁵ 미무라 미쓰히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세계 속의 북한 학: 과거, 현재, 미래』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10.28.).

⁶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주요 특징과 도전 요소: 북한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10.28.).

⁷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2015.04.29.).

⁸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⁹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¹⁰ 미무라 미쓰히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¹¹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¹²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주요 특징과 도전 요소: 북한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¹³ 이석기,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¹⁴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견해의 일치가 발견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예컨대 이 조치를 중국과 비교한 김석진¹⁵, 박형중¹⁶, 양문수¹⁷는 북한의 농업과 국유기업의 개혁뿐 아니라 사기업·사경제라는 경제주체/범주에 큰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했으며, 특히 박형중¹⁸, 양문수¹⁹는 이 조치가 중국의 1980년대 후반의 개혁조치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연구의 실증성 면에서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2016년에 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이 최근 국내에 입수된 것은 연구자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시행을 법제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 대한 자료·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12~2015년 제·개정 경제분야 법령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개략적인 전체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물론 북한 체제의 특성상 법률은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²⁰ 특히 북한은 이들 법령에 대해 북한식 경제개혁의 촉진 또는 뒷받침이라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들 법령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에 수록된, 2012~2015년에 개정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핵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 성격과 특징을 추출하고, 이 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¹⁵ 위의 글.

¹⁶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¹⁷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¹⁸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¹⁹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²⁰ 한국과 같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최고의 법규범인 헌법이나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도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말씀에 의해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하나의 장식이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말씀이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헌법이나 법규가 장식이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북한의 성문법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는 한명섭의 주장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파주: 한울엠플러스, 2016), p. 95 참조.

II. 김정은 시대 핵심 경제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

1. 농장법

농장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농장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2~2015년 개정 법령
농장의 경영활동 원칙	특별한 언급 없음.	농장책임관리제의 실시
농장 운영 관련 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 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 실시
계획지표의 분담	언급 없음.	중앙지표와 농장지표의 구분. 농장은 중앙지표 달성 전제 하에 자체로 농장지표 계획화 가능
농업생산조직 및 노동력배치	특별한 언급 없음.	여러 부업생산단위 자체 조직 가능. 직종별 노동력 배치 관련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재정 관련 권한	특별한 언급 없음.	농장의 현금 보유 가능. 농장지표 통해 획득 자금의 경영 활동 무제한 사용 가능. 주민들의 유희화폐자금 동원이용 가능
결산분배	원론적 언급(현금 분배 방식)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
국가수매와 농장의 자율처분	일정 수량만 남겨두고 전량 국가에 수매	국가 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농장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
가격제정 및 판매 권한	일부 농산물을 직매점 통해 판매 가능	국가 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기관·기업소 등에 판매 가능. 농장지표와 부업생산물은 농장 자체로 가격 결정 및 판매 가능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농장의 경영활동 원칙에 대해서는 종전 법령에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농장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제4조). 이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국영기업뿐 아니라 협동농장에도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농장 운영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종전에는 “분조관리제, 작업반 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였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작업반우대제와 독립채산제가 사라지고 분조관리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와 유상유벌제”

의 실시로 변경되었다(제22조).

농장의 계획화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선 농장지표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했다. 즉 “농장은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 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 수 있다(제23조)”라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즉 종전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표별 계획이 유일했는데 이제는 지표별 계획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농장이 자체적으로 고수의 작물을 선택,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눈에 띄는 것은 농장의 분배방식 변경이다. 종전에는 현금분배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제44조)”으로 바꾼 것이다.

분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산물의 국가수매 방식도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는 협동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종자, △농장원의 식량, △집집승먹이에 해당되는 수량을 제하고는 전량을 국가가 수매해 갔다. 그런데 이제는 농장의 생산물에서 국가가 미리 정한 수량을 먼저 수매하고,²¹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집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고, 더욱이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농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48조).

이와 함께 폭넓은 분야에서 농장의 자율성 및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농장이 여러 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 수 있도록 했고(제24조), 국가계획 수행과정에서의 영농시기와 방법, 직종별 노동력 배치 등에 대한 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제41조).

농산물의 판매 및 가격 결정에 대해서도 농장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2014년과 2015년의 법 개정을 통해 농장은 그 해의 농업생산물 총량에서 국가수매분을 제하고 여기에 농장원들의 식량분배몫을 제한 나머지 생산물을 다른 기관·기업소 등에 자율적으로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자금을 농장경영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50조). 또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농장 스스로 결정한 부업생산물에 대해서는 농장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0조).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농장의 재정권한의 확대이다. 2014년 및 2015년 개정

²¹ 더욱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국가계획기관이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 비롯한 국가의 생산수단 이용몫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계산하여 수매계획으로 시달하도록 했다. 국가수매의 기본 개념이 바뀌었다.

을 통해 농장은 은행 예금을 전제로 현금을 보유하고 이 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지표 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농장에 대해 “주민들의 유희화폐자금을 직접 동원·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제43조).

한편 2015년 개정에서는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 재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수매계획에서 조절할 수 있다(제48조)”는 조문을 신설했다. 농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여건의 문제에 기인하는 생산량 감소 등은 농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다소 합리적 색채가 있는 정책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 기업소법

기업소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4년 11월, 2015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기업소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4~2015년 개정 법령
기업소의 경영권	언급 없음.	기업소의 경영권이라는 개념 등장.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임.
기업소의 계획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적 계획 작성 가능. 이것을 기업소지표라는 개념으로 규정
기업소의 생산조직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생산조직권을 행사함. 자체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생산조직 채택 가능
기업소의 관리기구 및 로력(노동력) 조절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관리기구 및 로력(노동력) 조절권을 행사해 관리기구 조절 가능. 노동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음.
기업소의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
기업소의 무역과 합영, 합작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대외경제활동을 전개. 원료·자재·설비를 자체 해결하고 설비와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실현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언급 없음.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 부족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희화폐자금을 동원이용 가능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언급 없음.	기업소는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행사. 기업소지표,

판매권		수요자와의 주문계약 생산품은 자체로 가격 제정 및 판매 가능. 기업소 지표 생산물 중 소비품 등은 도소매 기관 등에 직접 판매 가능
노동보수	사회주의분배 원칙준수	기업소는 노동보수자금 분배규모를 종업원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고정재산 관리	건물, 시설물의 관리	기업소는 고정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감가상각법을 적용, 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마련. 유휴 부동산·설비는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 하에 다른 기업소에 이관, 임대하고 이 자금을 경영활동에 이용 가능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우선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범주가 등장했다. 그리고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 요구(제29조)”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종전에 국영기업에게 부여된 것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이었는데 이제는 국영기업에게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되었다. 그런 면에서 종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개정된 기업소법은 이러한 경영권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범주, 즉 9가지 권리에 대해 각 조문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9가지 권리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과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리킨다. 종전의 법령에는 경영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계획권, 생산조직권 등 기업의 9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다. 모두 다 이번의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범주들이다. 개정된 기업소법이 이들 9가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계획권이다. 종전과는 달리 이제 기업은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지표와 구별되는 기업소지표라는 개념·범주를 부각시켰다.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1조).

둘째, 생산조직권이다. 종전과 달리 이제 기업은 생산조직권을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게 협동생산조직과 전문화 생산조직, 결합화 생산조직, 대규모 생산조직 같은 여러 가지 생산조직형태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제32조).

셋째, 관리기구와 노력(노동력) 조절권이다. 종전에 노동력과 관련한 기업의 임무는 정해진 규정대로 노동력을 관리하고 노동력을 최대한 고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기구 및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육이 기업이 노동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었다(제33조).

넷째, 제품개발권이다. 기업은 제품개발권을 행사하여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제34조).

다섯째, 품질관리권이다. 기업은 품질관리권을 행사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품질감독전략과 제품의 품질 향상 목표를 규정·집행해나가고, 또한 제품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깔 등을 자체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35조).

여섯째, 인재관리권이다. 기업은 인재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제36조).

일곱째, 무역과 합병, 합작권이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소는 무역과 합병,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제37조)”는 조문을 신설했다. 나아가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수출품 생산을 위한 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제37조)”는 조문을 추가했다.

여덟째, 재정관리권이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경영활동을 원만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 수 있다(제38조)”는 내용으로 대폭 변경했다.

아홉째,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이다. 이제 기업은 △수요자와의 주문계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 △기업소 지표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확대를 실현할 수 있게”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업은 또한 기업소 지표 중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 등의 상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제39조).²²

²² 종전에는 현물계획(지표별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은 국가가 정한 가격에 국가가 정한 공급처에 공급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모두를 국가가 국정가격에 공급해 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따라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시장가격에 조달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한편 노동자 임금에 관한 기업의 책무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개정된 법에서 기업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동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대 원칙하에 “로동보수자금의 분배규모를 종업원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제48조)”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 정부가 기업에 대해 노동자 임금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것이 눈에 띈다.

3. 무역법

무역법은 김정은 취임 직전인 2012년 4월 3일에 개정되고, 이후 2015년 12월 23일에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다만 2015년에는 2012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2~2015년 개정 법령
무역거래의 주체 (무역거래 당사자)	무역회사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무역거래 허가요건 완화 및 허가절차 간소화	무역회사의 설립 신청 이후 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획득 필요	영업허가 신청만으로 가능
무역가격 결정 권한의 분담	모든 가격을 중앙이 결정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한 (현물) 지표의 무역가격은 중앙의 승인을 받음. 기타지표의 무역가격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결정
영업허가 철회	1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3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화시 지표의 분담	국가계획기관은 수출입총액과 같은 종합적 계획과 중요물자의 지표만 밝혀 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만 짚어 (현물지표로) 계획화함. 기타지표는 수출입액상으로 계획화 (무역거래 당사자가 자체로 계획화)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무역법의 경우, 무엇보다도 무역 분권화의 뚜렷한 진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즉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무역거래는

국정가격에 국가가 정한 공급처에 공급해야 했고, 따라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이제는 국가가 원료, 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조달)해 생산한 모든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공급한 원자재와 현물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으로서 공급처가 확정된 제품(계획생산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재의 경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유통망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제11조)”고 변경했다.

요컨대 대외무역거래, 즉 해외의 파트너와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license)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 또는 진입장벽의 대폭적인 완화가 특징이다. 대외무역은 종전에 철저한 허가제였는데 이제는 허가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허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외무역 허가 획득을 위한 요건도 완화되었고,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회사 설립을 신청해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검토를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으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이 회사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또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제13조).

아울러 무역거래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전의 무역회사와 마찬가지로 ‘위탁수출입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종전에는 무역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다른 단위에게 워크²³를 대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역거래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다른 단위에 대해 워크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17조).

또한 무역계획의 작성 및 실행에 있어서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성 및 권한이 확대되었다. 우선 무역계획 작성에 있어서 지표를 국가적인 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 3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현물계획으로 계획화하고, 기타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수출입)액상으로만 계획화하고, 구체적인 현물계획은 무역거래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즉 수출입 품목의 선정과 수량의 결정은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제30조, 제31조).

물론 이러한 정책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종전에도 모든 수출입 물자

²³ ‘워크’란 무역거래 당사자가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license)과 특정 품목의 수출입 수량(quota)을 합한 개념이다. 예컨대 A라는 무역거래 당사자(기관, 기업소 등)가 B라는 품목을 연간으로 예컨대 1,000톤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무역거래 당사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더욱이 사전에 허가를 받은 품목과 수량에 한해서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거래 당사자가 무역계획을 기반으로 ‘무역품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에 여러 ‘합의단위’의 승인을 받고, 이 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로소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는, 즉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문서이자 권리는 비공식 용어로 ‘워크’ 또는 ‘와끄’라고 불린다.

의 지표(즉 현물계획)를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요물자의 지표와 수출입총액만 계획화하고 이러한 국가의 무역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수출입지표는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에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무역계획 작성에 있어서 국가적인 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중앙과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무역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수출입계획을 작성하는 품목(즉 새로운 법에서는 '기타지표'로 규정된 것)이 종전보다 확대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대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역계획의 실행에서도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의 영역에서이다. 즉 종전에는 무역회사의 모든 수출입 관련 가격과 운임을 중앙의 무역지도기관 및 가격제정기관이 결정했으나 이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한 현물지표, 즉 국가적인 전략지표, 제한지표의 경우에만 수출입 관련 가격과 운임에 대해 중앙의 승인을 받고, 기타지표의 경우에는 무역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제19조).

한편 무역회사의 영업 철회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 것도 눈길을 끈다. 종전에는 무역회사가 1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을 때 영업허가증을 회수했으나 개정법에서는 3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을 때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도록 했다(제24조).

4. 인민경제계획법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 6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5년 개정 법령
계획지표의 분담	구체적 언급 없음.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 즉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지표 등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
계획의 맞물림과 주문계약	언급 없음.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함. 다만 이 맞물림은 주문계약으로도 할 수 있음.
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등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관, 기업소 등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가능. 주문계약은 연중 수시로 체결 가능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계획지표의 분담인데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했다. 종전에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줘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제13조)”는 문구를 추가했다.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과 관련해서는 주문계약이라는 방법도 허용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제18조)”는 문구를 삽입했다. 주문계약은 국가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즉 시장가격을 포함한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계약을 가리킨다.

기관, 기업소간 계약체결의 경우, 종전에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체결해야 하지만 주문계약은 연중 수시로 맺을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5. 자재관리법

자재관리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 9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자재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5년 개정 법령
자재의 공급방식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
자재공급계획 작성 주체	국가계획기관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기타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
자재공급계약의 체결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체결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체결. 자재의 추가적 수요에 대해서는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 계약 체결 가능.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은 기타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보다 먼저 체결
자재의 대금결제 방법	무현금 행표	무현금 행표가 아니어도 무방함.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자재관리법의 개정 내용은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경제 분야 핵심 법령의 개정에 조응하는 측면이 강하다.

우선 자재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변경·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법의 적용대상이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뿐이었으나 이제는 인민경제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을 통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경제단위로 크게 확대되었다(제8조). 이는 합법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방식이 종전에는 인민경제계획 하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인민경제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 등의 방식도 추가되어 합법적인 자재공급방식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자재공급계획의 작성 주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종전에 자재공급계획은 오직 국가계획기관만이 작성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개별단위들이 역할을 분담했다. 즉 이제는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기타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9조).

자재공급계약 체결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자재공급기관과 (자재 수요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다만 “자재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하여서는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 간 합의하여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제11조)”고 변경했다. 다만 이 경우,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은 기타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보다 먼저 맺는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재공급기관이 공급한 자재만으로 개별 경제단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등이 상호간 합의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이 경우 자재공급자는 자재공급기관이 아니라 개별 기업소, 단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계획에 기초해 움직이는 자재공급기관이 자재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 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것은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법령에는 ‘시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자재 대금결제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전에는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대금결제를 무현금 행표로 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대금결제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하여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종전에 있던, “대금결제는 무현금 행표로 한다”는 항목이 삭제되었다(제17조). 즉 자재 대

금결제를 반드시 무현금 행표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요컨대 개별 경제단위가 합법적으로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결제에서 현금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자재 공급도 합법화함과 동시에 현금결제에 의한 자재공급도 합법화해 준 것이다.

6. 재정법

재정법은 김정은 시대 들어 2015년 4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5년 개정 법령
국가예산자금의 지출	국가예산자금은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림.	국가예산자금은 기본투자와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림.
중앙예산 수입의 원천 (국세 과세 표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
지방예산 수입의 원천 (지방세 과세 표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 자금의 동원 원천	국가예산	국가예산과 기업소 자체예금(기업소에 적립된 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등)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국가 예산자금 지출의 우선부문이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국가예산자금을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예산자금을 기본투자와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리도록 변경되었다(제15조). 그리고 기본투자와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기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건설, 탐사, 대보수, 정보화 설계사업에 대한 지출”로,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업, 농업, 과학기술발전, 수산업, 산림업, 도시경영, 국토관리, 대외경제, 지방사업에 대한 지출”로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 수입의 원천, 즉 한국식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표준을 변경한 것이다. 즉 종전에는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은 중앙경제 및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순소득 또는 소득'²⁴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고 변경했다(제21조, 제22조).

즉 중앙예산, 지방예산 모두 세금 부과 기준을 종전에는 '순소득'으로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순소득 또는 소득'으로 변경했다. 즉 종전에는 기업의 국가납부금²⁵을 기업의 판매수입에서 원가를 제한 순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했는데 이제는 Δ 순소득 또는 Δ 소득(원가를 제하기 이전의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국가납부금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순소득 방식 하에서는 정부는 가능한 한 원가를 과소 반영하려고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과다 반영하려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실제 적용되는 원가의 크기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기업의 원가 및 소득배분에 일일이 직접 간섭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납부금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납부금의 납부 이후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발생하고 정부와 개별적 기업의 협상에 의해 납부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그런데 소득방식 하에서는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 이해의 불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원가의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이 갈등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국가납부금을 정하면 원가를 절감할 경우 국가납부 이후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난다. 따라서 원가 절감의 유인이 커진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개정된 재정법에서는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조달원천도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기업의 기본건설과 대보수를 위한 투자를 계획에 의해 국가예산에서 받아썼으나 이제는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업소 자체자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32조). 즉 기업소 자체자금에 의해 기본건설과 대보수를 위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공식화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무가 동시에 확대된 셈이다.

²⁴ 재정법에서의 순소득 = 판매수입-(원가-생활비), 또한 소득 = 판매수입.

²⁵ 기업의 국가납부금은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된다.

7. 중앙은행법

중앙은행법은 김정은 시대 들어 2015년 7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중앙은행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5년 개정 법령
중앙은행이사회 및 은행이사회 조직	금융 현안 협의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은행이사회를 운영. 중앙은행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	금융 현안 협의 및 대책마련을 위해 은행이사회를 운영. 은행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해당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 은행이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함.
화폐발행 계획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맞게 화폐발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함. 화폐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플레이션 억제와 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 가능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 가능
환율 관련 중앙은행의 임무 확대	중앙은행은 기준이자율을 제정하는 임무 수행	중앙은행은 기준환율과 기준이자율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임무 수행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중앙은행 조직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는 중앙은행 이사회를 은행 이사회로 대체한 것이다. 종전에는 비상설기구로 중앙은행 이사회를 설치, 운영했으나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은행이사회로 대체하고, 은행이사회의 실무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은행이사회의 이사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맡기로 했다(제10조, 제11조).

후술하겠지만 과거 사문화되었던 상업은행법이 김정은 시대 들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상업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는 중앙은행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러 은행들이 모이는 은행이사회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이사장, 이사로만 이사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이거나 이제는 은행들의 이사장, 이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도 이사회에 포함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런 해당기관의 필요한 성원들은 아마도 비(非) 금융기관 간부들이므로 보인다. 즉 실물 부문도 금융 부문과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 현안을 협의하고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해서는 비(非) 금융부문 기관들의 간부도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재정성, 무역성, 국가계획위원회 간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화폐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폐발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토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종전에는 국가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폐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폐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고 변경했다. 과거 통화증발이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화폐발행에 대해 경제상황에 맞게 정확한 계획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또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화폐의 매매에 대한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유통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 수 있다(제29조)”로 변경했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화폐 매매의 목적으로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기한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임무를 확대해 기준 환율의 제정, 기준 환율 및 기준이자율의 조정을 신규 도입했다. 종전에 중앙은행은 기준이자율을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기준환율과 기준이자율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변경했다(제30조). 시장경제를 제도 내에 수용하는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환율과 국정환율의 문제도 제도 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초보적인 상업은행 제도가 도입되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은 이제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기준 환율 및 기준이자율의 제정 및 조정에 힘을 많이 쏟겠다는 정책방향의 제시로 읽혀진다.

8. 상업은행법

상업은행법은 2006년 1월에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상업은행법이 더 이상 사문화된 법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업은행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업

은행법이 중앙은행법과 같은 시기인 2015년 7월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상업은행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법령	2015년 개정 법령
은행카드 업무	없었음.	상업은행의 신규 업무로서 은행카드 업무 도입
예금계좌의 개설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계좌 개설 가능. 계좌 개수 제한 철폐
부당한 계좌 개설에 대한 처벌	없었음.	상업은행이 거래자에게 부당하게 계좌를 개설해 주면 벌금을 물어야 함.

출처: 북한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상업은행의 신규 업무로서 은행카드 업무를 도입한 것이다(제18조). 이 법의 개정 몇 개월 전에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2015.02.20.)와 인터뷰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국내의 자금을 원활히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인민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제주체의 은행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발생했다. 즉 종전에는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을 통해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요컨대 1개 은행 1개 계좌의 원칙을 완화해 1개 은행 다수 계좌로 바꾸어 주었다. 즉 거래자가 하나의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하되, 한 개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은행이 거래자에 대해 부당하게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종전에는 은행이 “부당하게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부당하게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제53조)로 변경했다. 이는 은행이 거래자에 대해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관리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읽혀진다.

Ⅲ.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성격과 특징

1. 계획화 체계의 개편: 중앙과 기업간 계획지표²⁶의 분담체계 개편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인민경제계획법, 농장법, 기업소법, 무역법, 자재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화 체계를 개편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정부와 개별 생산·무역 단위 간 계획지표의 분담체계를 공식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우선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과 기업소법은 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등 3개의 지표로 나누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들어줘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소법은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해 '계획권'을 부여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종전과는 달리 이제 기업은 계획권을 가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 작성되는 지표는 기업소지표라 해서, 중앙지표, 지방지표와 구별되는 개념·범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 분야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기업소지표라는 개념 대신에 농장지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농장법에서는 농장이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익성이 높은 여러 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역분야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지표를 국가적인 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 3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현물계획으로 계획화하고, 기타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수출입)액상으로만 계획화하는데 그치고, 이후 구체적인 현물계획은 무역거래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식으로 중앙과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지표를 새롭게 분담했다.

이처럼 계획지표에서 중앙과 기업의 분담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자재공급계획에서도 중앙과 기업의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종전에 자재공급계획은 오직 국가계획기관만이 작성했지만 이제는 중앙과 개별경제주체들이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이제는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

²⁶ '계획지표'란 기업이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수행해야 할 현물 과제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가리킨다.

성하고, 기타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중앙과 개별 생산·무역 단위 간 계획지표의 분담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기업을 비롯한 개별 생산·무역 단위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 단위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물 과제(계획지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는 중앙 정부가 관할하는 ‘계획지표’가 대폭 축소되고 기업이 스스로 계획화하는 지표가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²⁷ 북한의 개정 법률에 나타난 개념으로 보면 중앙지표가 크게 줄고 기업소지표가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에 대한 원자재 할당제 또한 축소 또는 폐지됨을 의미한다.

2. 시장을 계획화 체계에 편입: 시장화에 대한 제도화 수준의 제고

앞에서 보았듯이 개정 법령에서는 국영기업과 농장이 스스로 계획화할 수 있는 제품들이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계획화 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들 제품은 기업과 농장이 원자재를 계획당국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업과 농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당연히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합법화되고, 더욱이 국가의 계획화 체계에 편입되었다.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제품, △수요자와의 주문계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해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기업이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재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각종 도소매기관 등 모든 유통망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농장법에서는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산물과, 농장 스스로 결정할 부업생산물에 대해서는 농장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즉 상기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다.

²⁷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지표가 과거에는 10이었다고 하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는 현재는 1~2개의 중요지표만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三村光弘,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ERINA REPORT*, no. 130 (2016), p. 2.

아울러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인민경제계획에서 지표의 수요와 동원 원천을 맞물리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의 계획에 추가해 주문계약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허용되었다. 이는 국가계획에 의해 사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즉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계약을 가리킨다. 또한 자재공급에 있어서도 국가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자재공급기관은 개입하지 않고 개별 기관, 기업소가 스스로 상호간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것, 즉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이 경우, 대금결제는 현금거래방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 법령을 통해 기업·농장이 스스로 원자재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생산품목의 선정, △원자재의 시장가격으로의 구입, △제품의 시장가격으로의 판매, △판매자금의 현금으로의 보유 등 시장을 활용한 기업·농장의 폭넓은 경영활동이 합법화되었다. 물론 개정 법령에는 시장 또는 시장가격이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장 또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경우는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종전에 7·1조치 때는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번 수입 지표'를 신규 도입했고, 이를 기업에 대해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인정했다. 그런데 시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국가 계획의 밖에 있는 존재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시장에 대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국가계획화 체계의 내부로 편입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국민 경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위상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따라서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 또한 종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업·농장의 자율성·권한 및 인센티브 확대

앞에서 보았던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는 기업 및 농장이 스스로 계획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업·농장의 자율성 및 권한이 종전보다 확대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종전에 국영기업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인 경영권'은 국가가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영기업이 국가로부터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받았다.²⁸ 즉 국영기업의 권한이 종전과는 차원이 달

²⁸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4호 (2015), pp. 14~16; 계춘봉,

라졌다고 할 수도 있다.²⁹

개정된 기업소법은 이러한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권'을 구성하는 9가지 권리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9가지 권리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동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범주들이다.

또한 농장의 경우, 농산물의 국가수매의 존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권'보다는 상대적으로 포괄범위가 좁고 수준이 낮지만 종전보다 자율성·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즉 △국가계획 수행 과정에서의 영농시기와 방법, △여러 가지 부업생산 단위의 조직,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결정 및 판매, △국가수매량 납부 이후의 농산물에 대한 분배·처분방식 등에 대해 농장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무역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대폭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만 대외무역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허가만 받으면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역계획의 작성 및 실행에 있어서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성 및 권한이 확대되었다. 개정법에서 '기타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수출입 금액으로만 계획화하고, 구체적인 현물계획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즉 수출입 품목의 선정과 수량의 결정, 나아가 수출입가격의 결정까지도 무역거래 당사자의 자율에 맡겼다.

기업·농장의 자율성·권한과 함께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의 경우,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국가납부금 제도를 '순소득' 기준에서 '순소득 또는 소득' 기준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원가의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이 갈등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수입(즉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납부금을 정하면 원가를 절감할 경우 국가납부 이후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늘어난다. 따라서 원가 절감의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적 경영권의 특징," 『경제연구』, 2호 (2016), pp. 12~13.

²⁹ 조총련계 경제학자 강일천은 이에 대해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된다면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일천, "김정은 시대 경제강국 건설의 새 진전: 인민생활과 경제관리에서의 새로운 전개를 중심으로," 『정경론집』, 14호 (2016.04.10.), p. 29.

둘째, 국가예산납부 이후의 기업 소득, 즉 기업 가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2013.12.23, 인터넷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기업의 총수입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등 납부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업의 분배몫, 즉 가치분 소득이 된다. 종전에는 △생산확대, △과학기술발전, △노동보수, △문화후생 등 용도에 따른 가치분 소득 배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분율을 정할 수 있다. 가치분 소득의 100%를 기계설비의 갱신에 사용할 수도 있고, 가치분 소득의 100%를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에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 가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면 기업으로는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해 기업 가치분 소득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받는다.

농장의 경우, 가장 큰 것은 분배방식의 변경이다. 종전에는 현금분배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 종전에 농장원들은 배급량 수준의 곡물을 수취해, 현물분배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주로 현금분배를 받았다. 그런데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농장원들에게 현금분배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농장의 생산물에서 국가가 미리 정한 수량을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장원들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고, 더욱이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농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농장원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면 자신들에 대한 현물분배도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4. 국민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역할 확대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등 3개의 지표로 나누고, 정부는 중앙지표만 계획화하고 기업소지표의 계획화는 기업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달리 보면 계획화 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식적인 국민경제의 운영에서 계획의 비중과 위상을 낮추고 시장의 비중과 위상을 높인다는 것 또한 국민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역할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개정된 재정법에서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의 조달원천에서 국가예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소 자체자금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종전에는 기업의 기본건설과 대보수를 위한 투자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했으나 이제는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업소 자체자금으로도 충당하도록 바뀌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무가 동시에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개정 기업소법에서는 노동자 임금에 관한 기업의 책무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노동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임무에 더해 노동자 임금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사실 국민경제 운영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역할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북한이 2016년의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을 제시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문헌에 따르면 계획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정밀한 설계도인 반면 전략은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개괄적 설계도 또는 이정표라는 특성이 있다.³⁰ 또한 경제발전전략이 개괄적인 설계도라고 한다면, 경제발전계획은 경제전략에서 제시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¹ 아울러 종전에는 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했으나 이제는 전략의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³²했다.³³

따라서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중기적 경제운영 핵심축으로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을 내세운 것 자체가 향후 국민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역할 확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⁴

³⁰ 박흥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이해(이해)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3호 (2008), pp. 12~14.

³¹ 서성철, “국가경제발전계획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경제연구』, 4호 (2013), pp. 11~13.

³²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pp. 14~16.

³³ 경제발전전략과 경제발전계획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59권 3호 (2016), pp. 131~132 참조.

³⁴ 북한 문헌들은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가 경제부들 사이의 균형 보장이나 경제구조의 개선과 같은 문제들, 개별 기업들이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특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고 있다.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pp. 14~16; 최성봉,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필요성,” 『경제연구』, 1호 (2016), pp. 11~12.

5.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사후적으로 추인

이번의 제도 개편의 기본 성격은 종전에 국가의 공식 제도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상당 정도 공식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한 것이다. 즉 종전에 있던, 시장을 활용한 광범위한 불법적 또는 반(半)합법적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사실 경제난 발생 이후 기업의 실질적인 자율성 및 의사결정권한은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확대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가게,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의 법·제도와 충돌되는 각종 불법 및 반합법 행위를 전개해, 공식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갈수록 커져갔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김정일 시대에 7·1조치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현상과 각종 불법 및 반합법 시장경제활동을 일정 수준 사후적으로 승인해줌으로써 공식 제도와 현실의 괴리의 폭을 크게 좁혀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개별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각종 불법 및 반합법 시장경제활동은 공식 제도가 허용한 수준을 넘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가는 김정은 시대 들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통해 7·1조치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가게,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및 권한의 확대, 각종 불법 및 반합법 시장경제활동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승인해, 한 번 더 공식 제도와 현실의 괴리의 폭을 좁히고자 한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 그 방향성은 후술하듯이 정부, 기업, 가게 등 이른바 경제 3주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다.

6. 제도개편의 기본 방향: 정부, 기업, 가게의 이해관계 절충을 통한 타협의 모색

이번의 제도개편의 큰 방향성은 정부, 기업, 가게 등 이른바 경제 3주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3자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확대를 통해 정부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가게, 즉 노동자의 목표는 가게수입, 즉 임금수입의 극대화이고, 기업의 목표는 기업 가처분 소득의 극대화와 종업원의 생계유지이다. 또한 정부의 경제적

목표는 현물계획의 달성과 재정수입 확충을 통해 국가 유지를 위한 물자와 자금을 확보·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3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3자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3자의 타협 또는 3자의 이해관계의 절충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통상 사회주의국가의 재정개혁 및 기업개혁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는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달리 보면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는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달리 보면 국가, 기업, 노동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다. 예컨대 국가납부금 제도를 순소득 기준에서 순소득 또는 소득 기준으로 변경했고, 또한 국가예산납부 이후의 기업 소득, 즉 기업 가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었다.

사실 종전에는 국가납부금 납부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사이에 빈번하게 갈등이 표출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아예 외면하거나 정부의 의지를 기업에 강요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일일이 간섭·간여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에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또 기업의 각종 불법활동을 근절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수용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타협점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오히려 정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IV.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

1. 전반적인 성과와 한계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기본 성격이 생산성 향상, 생산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극심한 부족상태, 특히 에너지, 원자재, 자금난이 걸림돌로 작용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 해도 에너지와 원자재가 극심하게 부족하고, 더욱이 자금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 생산 확대 등과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기는 어렵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제도의 변경을 매개로 기업, 농장 등 개별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활용해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경제주체들은 보다 확대된 합법적 공간을 활용해 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원자재를 조달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수입도 늘리는 한편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생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주어진 생산능력 하에서 가동률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제고해 생산을 확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현재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원 및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이제부터는 투자자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의 역할을 늘리는 한편, 기업에게 자체자금 배분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유하게 된 설비에 대해 기업의 처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는 기업 내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생산능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의 유희화폐자금과 은행자금을 이용해서 투자자금을 확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국영기업이 외국과 합병·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데 대해 종전보다 법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준 것은 원론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능력, 따라서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합병·합작을 통하여 투자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2. 제도개편의 포괄범위 및 내용 면에서의 한계성

이번의 제도개편을 통해 자원배분 메커니즘 차원에서의 변화, 즉 공식경제 운영

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것은 충분히 읽혀진다. 하지만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식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었던 소유권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모색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물론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문제의 불법성을 완화시켜 준 측면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적소유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한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의 제도개편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국가납부금 등 사실상의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읽혀지지만 이른바 사회적 과제(또는 정책과제),³⁵ 충성자금(또는 혁명자금),³⁶ 세외부담 등 준조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물론 공식적인 제도를 다루는 ‘법령’이라는 공간에서 준조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 농장, 무역단위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조세뿐 아니라 준조세도 큰 규모의 지출이고, 따라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준조세는 그 크기가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줄어든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종전과 그대로일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번의 제도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조세인 국가납부금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의 갈등 여지를 줄여 주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었지만 향후 준조세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이번의 제도개편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준조세와 관련한 변화가 전혀 모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치적 과정, 혹은 비경제적 강제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점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한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의 제도개편에서도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³⁵ 사회적과제(또는 정책과제)란 마식령 스키장 건설, 강원도 세포등판(축산기지) 조성, 삼지연 발전소 건설, 희천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건설, 그리고 두만강 국경지역 살림집 개보수 및 신축, 강원도 사과나무 조성사업, 각종 도로 건설 등 지방 차원의 각종 건설을 위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업, 농장 등 생산단위들이 부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³⁶ 충성자금(또는 혁명자금)이란 당자금으로도 불리는데 각 기관·기업소 소속의 무역회사들이 계획과제와는 별도로 충성의 표시로서 최고지도자에게 상납하는 외화자금이다. 국가계획과는 상관 없는, 일종의 계획 외 과제로서, 외화벌이를 통해 확보한 외화자금을 최고지도자에게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외화벌이는 ‘충성의 외화벌이’라 칭하고, 그 외화자금은 ‘충성자금(또는 혁명자금)’이라 명명한다.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각중심의 경제운동을 외쳤지만 특권기관 소속 기업 및 무역회사를 경제계획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거나 경제운영에 있어서 특권경제 규모를 축소하고 내각경제(또는 일반경제) 규모를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 또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한계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3. 정부 약속의 이행 여부

북한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농장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농장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었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납부몫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기업의 분배몫, 즉 가치분 소득으로 인정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기관이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 비롯한 정부의 생산수단 이용몫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계산하여 수매계획으로 시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수매량을 수매한 이후 나머지 농산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농장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물을 수매계획에서 조절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기업·농장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농장의 경우 농업생산물, 기업의 경우 판매수입 및 기업가치분소득 등 이른바 분배의 영역에서 정부가 종전과는 달리 개입하지 않고 기업·농장의 자율처분에 맡기겠다고 한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³⁷

4. 민간 자금의 동원 가능성

북한정부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의

³⁷ 북한정부가 '포전담당제' 실시 이후 농민들과의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북한 전문 매체들이 종종 전하고 있다. 2014년 10월 당시 진행 중이던 '현물분배'는 '포전담당제'에 따른 알곡수확량과는 상관없이 농민들의 '노력공수'에 따른 분배로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450g씩, 1년분으로 한 사람당 165kg의 식량이라고 북한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포전담당제'를 시행하면서 생산된 식량의 70%를 당국이, 나머지 30%를 농민들에게 분배한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09.12; 『자유아시아방송』, 2014.10.06.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 즉 주민들의 ‘장롱 속 현금’을 끌어내어 은행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초보적인 금융개혁적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전자카드의 도입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2015년에 상업은행법을 개정해 상업은행의 신규 업무로서 은행카드 업무를 도입했다. 북한정부는 주민들에 대해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유통되는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조선 무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나래카드와, 2011년부터 특수기관 소속 은행인 고려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고려카드이다. 나래카드는 우리의 티머니(T-money)와 유사한 것으로서 충전식(100~1,000달러)으로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은행계좌와 연동되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전자카드의 이용 증대는 국내에 유통 중인 화폐규모를 줄이는 한편 은행의 수중에 집중시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자카드는 상대적이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강점으로 인해 국내의 외화 및 내화자금 동원, 대출재원 확충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³⁸

한편 북한은 2004년과 2006년에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각각 제·개정해,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유휴자금을 은행권으로 흡수하여 기업들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상업은행의 도입에 따른 자본주의적 요소의 유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여전히 컸고,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가계나 기업이 현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시대 들어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상업은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2호에 실린 ‘현금계획은 발권과 통화조절의 기초’라는 제목의 논문은 “지방,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현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고 발권과 통화조절 과제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며 지방 상업은행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북한 문헌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 상업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린 셈이다.³⁹

³⁸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pp. 142~144 참조.

³⁹ 이와 관련, 최문 연변대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어느 학술회의에서 2014년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했고, 평양에서만 현재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한편 개정된 기업소법과 농장법은 기업과 농장이 앞으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동원해 기업과 농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업과 농장의 어떤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기업의 원자재 구입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설비투자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설비의 소유권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자금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현실세계에서는 돈주들이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다.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해 돈주들은 현금 또는 현물(원자재)을 대여하고 현금 또는 현물(생산제품)로 상환을 받았다. 돈주가 국영기업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종전에는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공급용의 이자율은 현실세계의 사금융의 이자율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과 돈주간에 어떤거래가 없을 수 없다. 예컨대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이자 이외의 추가적 이자에 대한 어떤거래이다. 나아가 실제로는 설비투자자금도 대부자금의 외피를 쓰고 유입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차피 기존의 사금융을 공급용화한다고 해도 전부를 공식제도 차원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일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기업에 대한 사금융은 보다 확대되겠지만 공급용과 사금융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5. 파급효과: 시장화의 촉진⁴⁰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북한의 시장화를 크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을 일부 합법화한 7·1조치가 북한의 시장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기해 보면 쉽게 짐작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 만기 상품이 연 5%로서 중국은행보다 2~3배 높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7.08.20. 다만 최고수가 언급한 “평양의 30~40개의 상업은행”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⁴⁰ 이 절의 서술은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59권 3호 (2016), pp. 145~146에 토대를 두고 있다.

수 있다. 7·1조치는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경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사실 가계,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7·1조치가 가지는 최대 의미는 시장을 활용하는 불법적 및 반(半) 합법적 경제행위에 대해 북한정부가 일정 수준 승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제행위, 즉 시장을 활용하는 각종 불법적 및 반합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유화적/우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가계와 기업은 7·1조치를 통해 ‘자력갱생’을 새로운 신념체계로 수용했으며,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정당화되었다.

더욱이 7·1조치를 계기로 시장화가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이른바 계획/공식경제와 시장/비공식경제의 연계성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계획/공식경제는 시장/비공식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물론 북한에서 계획/공식경제와 시장/비공식경제의 연계성, 상호의존성이 확대·심화되는 과정은 계획/공식경제와 시장/비공식경제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과정이기도하다. 더욱이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이 국가계획의 수행, 나아가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대체로 보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다. 우선 기업에 대한 지령형 계획화와 원자재 할당배분제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계획화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 확대와 함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기업 이윤 수취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기업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의 자기책임은 증가한다.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에 대한 지령형 계획화의 축소 또는 폐지,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정책을 수립·실행, △기업 자율성 및 인센티브의 대폭적인 확대 및 자기책임의 증가 등이다. 물론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 관한 정보·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

증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⁴¹

한편 북한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비록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러한 개혁조치의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경제개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제도화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전체 경제 운영에 있어서 특권경제 및 준조세의 비중과 위상이 지나치게 높다.

김정은 시대 개정 법령을 통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조치의 성격은 대체로 보아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보다 경제개혁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원자재난, 에너지난, 자금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재의 주어진 생산능력 하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국영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더욱 확대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법령 차원의 논의, 공식 제도 차원의 논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이나 공식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가 법을 통해 약속한 것들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개편의 내용 면에서도 시장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했지만 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조치의 한계도 작용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취한 경제개혁 조치가 앞으로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닐지 외부세계의 입장에서도 눈을 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제출: 10월 30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22일

⁴¹ 사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조선신보』, 대북전문 매체, 북한의 『경제연구』 등이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의 입수로 인해 그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파주: 한울엠플러스, 2016.

2. 논문

강일천. “김정은 시대 경제강국 건설의 새 진전: 인민생활과 경제관리에서의 새로운 전개를 중심으로.” 『정경론집』. 14호, 2016.04.10.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4호, 2013.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동향과 전망.” 『통일경제』. 겨울호, 2013.

미무라 미즈히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세계 속의 북한 학: 과거, 현재, 미래』.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10.28.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2015.04.29.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이석기.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3.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주요 특징과 도전 요소: 북한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10.28.

계춘봉. “실제적 경영권의 특징.” 『경제연구』. 2호, 2016.

박홍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이해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3호, 2008.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4호, 2015.

최성봉.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필요성.” 『경제연구』. 1호, 2016.

三村光弘.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ERINA REPORT*. no. 130. 2016.

3. 기타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Abstract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observed through the revised laws in the Kim Jong En era.

Moon-Soo Y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ndments of the core laws of the economy in the laws enacted and revised in 2012~2015 in the “Co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edition).” In this way, I will grasp the main contents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in the Kim Jong Un era, extract its characteristics, and briefly summarize the performance, limitations and ripple effects of this measures.

It is clear that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taken through the Code, has considerable elements in common with the economic reform of socialist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indicators that a enterprise has to achieve mandatory, a reduction i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national economic operations, and a expansion of autonomy, incentives and self-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However, North Korea has other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socialist countries. The reduction and abolishment of the directive planning for enterprises is not the int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post -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reality that the planning economy is broken down.

This measure is considered to have progressed much more than the trial reform measures of the 2003~2004 Prime Minister Park Bong-Joo, not to mention the 7·1 measures in 2002 in terms of level, depth and range of reform.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changes in laws or official systems will immediately lead to changes in the way the economy operates in reality.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contents of institutional restructuring, which does not deal with issues such as ownership, quasi-taxes, and privileged economy.

Key Words: North Korea, Law, Institutio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Economic Reform

